

(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-참조2)

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

의회 방청 및 청사 개방

□ 의회방청

- 방청시기 : 연중(회기중)
- 대 상 : 시민, 학생 등
- 추진방법 : 의원 추천 및 직접신청
- 내 용 : 의회 방청, 의사결정 과정 학습 및 의정활동의 이해
- 지금까지 추진실적 : 74명

□ 청사견학 및 시설 개방

- 시 기 : 연 중
- 대 상 : 관내 시민 및 학생, 기관·단체, 타 시·군의회 등
- 대상시설
 - 청사견학 :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
 - 시설개방 : 1층 로비, 회의실, 세미나실
- 내 용
 - 청사견학 : 학생들의 교육목적 및 타시군의회의 벤치마킹, 시민 대상 일반 견학 등
 - 시설개방 : 전시회, 회의, 교육, 세미나 등
- 지금까지 추진실적
 - 청사견학 : 409명
 - 시설개방 : 93회

재산등록 및 병역사항 신고

□ 재산등록

- 대 상 : 제6대 성남시의회 의원 34인
 - 단, 재선이상 의원 제외되나 주식 3천만원 초과 소유시 1월이내 신고 및 주식 백지신탁 심사청구 의원인 경우 상임위원회 변경시 신고대상
- 신고기간 : 2010년 7월 1일 ~ 8월 1일
 - 정기 변동신고 : 매년 1월 1일 ~ 2월 28일
- 신고방법 및 내용 : 인터넷(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/ www.peti.go.kr)신고
 - 2010. 7. 1일 기준 본인 및 직계존비속 등의 부동산, 예금, 주식 등
 - 정기변동신고 2010. 1. 1부터 12. 31까지 사이에 발생한 등록대상 재산의 변동사항
 - 주식의 경우 30,000천원이상시 매각, 백지신탁, 직무관련성심사 청구 등 3가지 중 택일
 - ※ 단, 직계존비속중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고지거부 가능

□ 병역사항 신고

- 대 상 : 제6대 성남시의회 의원 34인
- 신고기간 : 매년 1월 중
 - 6. 2지방선거 당선의원의 경우 의원 후보등록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내역으로 병무청에서 일괄처리
 - ※ 단,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별도 통보
- 신고방법 : 서면 또는 인터넷
 - 병무청 홈페이지 “뉴스마당” → “공직자등 병역사항 공개”
- 신고내용
 - 신고의무자 본인과 18세 이상인 직계비속(외손자 포함)
 - ※ 신고의무자가 된 날이 속하는 해에 만18세이상인 되는 것을 의미

□ 껌직금지 및 신고

● 관련법령 : 지방자치법 제35조

● 껌직금지 대상

- 공무원, 공공기관 임직원, 농·수산업·싢협, 새마을금고, 산림조합 등의 임직원은 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연퇴직.
- 교원(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·부교수·조교수 및 전임강사)의 경우 지방자치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휴직 해야 함.
- 지자체로부터 재정(다·소 및 영리·비영리 불문)지원받는 기관·단체 등의 관리인(사실상 영향력 행사하는 임원, 직위 불문)은 껌직금지

● 껌직신고 대상 : 껌직이 허용된 모든직 의장에게 서면신고

- 영리 및 비영리, 상임 및 비상임, 기관·단체 등의 대표자·종사자 및 자영업자 포함

※ 법령등에 근거가 없는 자생적인 직으로서 학교 동문회 등은 예외

● 신고기간

- 당선 전부터 껌직한 경우 임기개시 후 1월 이내
- 임기 중에 껌직한 경우 취임 후 15일 이내 신고

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

● 2010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

- 회 기 운 영 (정례회 2회, 임시회 6회)..... 연간 100일 이내

※ 특별위원회 사안 발생시

● 임시회 운영계획(52일)

회 기 별	운영기간	일 수	내 용	비 고
제 167 회	1. 20~1. 22	3일	•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	기 운영
제 168 회	2. 18~2. 26	9일	•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• 시정업무계획 청취 • 교섭단체 대표연설	"
제 169 회	6.22	1일	•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• 결산검사위원 선임	"
제 170 회	7. 8~7.28	21일	• 의장, 부의장 선거 • 상임위원장 구성 및 선거	"
제 171 회	8. 24~8. 30	7일	• 업무보고 청취	
제 173 회	10. 12~10.22	11일	•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•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	

● 정례회 운영계획(46일)

회 기 별	운영기간	일 수	내 용	비 고
제172 회	9. 1~9. 16	16일	•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•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• 결산승인안 심사	
제174 회	11. 22~12. 21	30일	•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• 2010년 행정사무감사 •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• 2011년 예산안 심사	

의정 활동의 전문성 제고

☐ 의회 고문변호사제 운영

- 근 거 : 성남시의회 법률고문운영조례
- 위촉인원 : 2명(임기 2년)

연번	성 명	사무실	연락처
1	김성만 변호사	성남시 중원구 금광동4713(5층)	031-741-4774
2	이현용 변호사	성남시 분당구 서현동268-2 (새길법률특허사무소)	031-707-5005

- 내 용 : 의회의 처리의안 등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성남시의회 의장이 위임한 쟁송사건의 수행 등

☐ 의원연구단체 운영

- 구성인원 : 5명(회장 1, 회원 4)
 - ※ 각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 가능
- 연구활동 운영 절차
 - 연구단체 등록 신청 및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: 2월 20일
 -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사 : 3월중
 -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: 12월 15일

☐ 의원 자료실 운영

- 운영기간 : 연중
- 자 료 실 : 의회청사 3층(114m²)
 - 도서보유량 3,394권
 - 인문·사회 1,679권, 문학 1,298권, 기술 319권, 기타 98권
- 추진사항
 - 의원추천도서 신청을 받아 전문 및 교양도서, 간행물 등 구입비치
 - 수시 도서 대출

재해지역 및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

☐ 재난·재해 복구 봉사 활동

- 시 기 : 연중
- 대 상 : 재난 및 대형사고 등 발생지역
- 내 용
 - 피해지역 방문 격려 및 의연금 전달 등
 - 장비·인력 복구지원 및 구호활동 등

☐ 사회 소외계층 위문과 봉사 활동

- 시 기 : 설날, 추석, 수시
- 대 상 : 사회복지시설
- 내 용 : 현장 봉사활동 참여 및 위문품 전달로 시민과 함께하는
의원상 정립과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

☐ 전·의경대 위문 활동

- 시 기 : 연말
- 대 상 : 관내 전·의경대
- 내 용 : 위문품 전달 및 위로·격려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원상
정립과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

활기찬 의정활동을 위한 교류증진

□ 개원기념식 및 의회 폐회연 추진

● 제6대의회 개원기념 축하연

- 일 시 : 2010. 9. 1(수)
- 대 상 : 150명(의원, 전직의장, 의정동우회, 간부공무원 등)
- 주요내용 : 기념사 및 축하, 다과

● 2010년도 의회 폐회연

- 일 시 : 2010. 12. 21(화) (제2차 정례회 폐회 후)
- 대 상 : 150명(의원, 전직의장, 의정동우회, 간부공무원 등)
- 주요내용 : 기념사 및 축하, 공무원표창, 오찬 및 환담

□ 의원 취미활동 활성화

● 추진시기 : 연 중

● 대 상 : 전의원

● 종 목 : 등산, 축구, 배드민턴 등 취미모임

● 지 원 액 : 120천원/년, 1인

● 예산과목 :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

● 추진방향

- 의원 개인별 취미활동 사전 파악 및 협의
- 연간 활동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

● 활동내용 : 체력증진을 위한 취미활동과 소외 계층을 위한 의정 활동 전개로 의원들의 역량 강화

□ 의원·직원 화합의 날 운영

● 추진계획

- 시 기 : 연중(수시)
- 대 상 : 의원, 의회사무국 직원
- 내 용
 - 체육행사 : 축구, 족구, 배구 등
 - 등산대회 : 남한산성, 청계산, 시계등산로 등 관내지역 등산
(자연보호 활동 병행)

● 기대효과

- 의원·직원간 이해증진으로 상호 신뢰감 조성
- 능동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 계기 마련

지방의회 비교견학 및 국·내외 연수실시

□ 지방의회 비교견학

● 추진계획

- 시 기 : 상임위원회별 적의 선정
- 대 상 : 모범 지방의회 선정
- 인 원 : 의원, 전문위원, 위원회담당 등
- 견 학 반 : 각 상임위원회별 및 기타 특별위원회
- 주요내용
 - 지방의회 및 상임위원회 운영실태 비교 파악
 - 복지환경, 문화시설, 체육시설 등 견학
 - 의회간 현안사항 논의 및 정보교환 등

● 예 산 액 : 21,039천원

□ 의원 공무 국·내외 연수의 내실화

【국내연수】

- 시 기 : 2010년 하반기
- 장 소 : 교섭단체 협의후 선정
- 대 상 : 의원 전원 및 사무국 직원
- 소요예산 : 50,000천원
- 주 관 : 의회사무국
- 방 법 : 전문기관 위탁교육
- 내 용
 - 전문과정 : 회의진행, 예산심사기법, 의안심사, 행정사무감사
 - 일반과정 :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운영 전반

【국외연수】

● 개 요

- 추진방법 : 연수단 구성(교섭단체 협의)
- 추진시기 : 2010년도 하반기 비회기 중
- 예 산 액 : 66,200천원
 - 의장, 부의장 : 5,000천원(2,500천원/1인)
 - 의 원 (34명) : 61,200천원(1,800천원/인)
 - 방문대상국 : 연수단에서 선정
- 내 용 : 기관·시설 방문 등 실용중심의 해외연수 실시
- 기대효과
 - 선진 외국의 각종 우수사례를 비교 견학하여 우리시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 모색

□ 직원 업무연찬 기회 확대

● 시 기 : 수시

● 교육기관 : 국회, 중앙 및 지방 교육원, 연구소, 기타 교육기관 등

● 대 상 : 사무국 직원

● 추진방법

- 비회기 기간을 이용한 내·외부기관 등 교육참여기회 확대로 의회사무국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의정활동 보좌기능 강화

의정활동 홍보강화

□ 보도자료 적기제공

- 제공시기 : 사안발생시(의회 시작 전 및 의안 등 의결 후) 즉시
- 언론기관 : 신문사(중앙 15, 지방 28, 지역22개사), 지역방송(4개사) 등
- 추진방향
 - 의회 및 위원회별 의원별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하여 적기제공
 - 보도사항 분석, 왜곡 보도에 대한 신속한 해명자료 배포
 - 적극적인 취재지원 및 간담회 등을 통한 비판보도 최소화

□ 제6대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

- 시 기 : 2010. 8월중
- 내 용 : 6대의회 출범에 따른 현황자료 수정 및 시민의 참여율 제고를 위한 시민 중심의 홈페이지로 개편
- 소요예산 : 6,000천원

□ 회의록의 신속한 제작·공개 및 관리

- 시 기 : 정례회 및 임시회시 후
- 추진방법
 - 장비의 현대화(전자속기기계구입 5대 / 9,500천원)
 - 회의록 검색기능 업그레이드를 통한 검색속도 가속화 시스템 확대구축
 - 국회 및 속기협회 등 업무연찬을 위한 속기 마인드 함양교육 참여
- 내 용 : 회의록 공개 단축운영(30일내외 → 2~25일 이내)

의정활동자료 발간 · 홍보

□ 의회소식지 제작 및 배부

- 의정활동기간 : 2010년 1월 ~ 12월
- 제작시기 : 매분기초(1월, 4월, 7월, 10월)
- 제작수량 : 15,000부(소요예산 39,000천원)
 - 전국 광역 · 기초의회, 본청 및 사업소 실과 및 유관기관,
각 구청 및 동, 구독희망자(우편 및 직접배부)
- 제작면수 : 16면(타블로이드판, 신문용지 반절크기)
- 편집(안)결정 : 의회소식지 편집위원회 검토 후 결정
- 지금까지 추진실적 : 1회 15,000부

□ 의회안내책자 및 리후렛, 의원총람 발간

- 시 기 : 2010년 8월중
- 수 량 : 4,800부(의원총람 800부, 안내책자 등 4,000부)
- 내 용 : 의회의 구성과 역사, 권한과 기능, 운영절차 등 수록
- 교부대상 : 의회 시설견학 및 방문객, 시설 개방 시 및 타의회
견학시 등 제공
- 소요예산 : 38,400천원

현안사항

행정구역 통합 표결 관련 소송 진행상황

□ 현 황

- 사건번호(사건명)
 - 2010가합1414(성남시의회 표결 무효확인)
 - 2010카합50(효력정지 가처분신청)
- 원 고 : 교회영 외 14인(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장유식)
- 피 고 : 성남시의회의장(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탑 박정익)
- 내 용 : 2010.1.22 성남시의회에서 의결한 ‘의사일정변경안’ 및 ‘성남·하남·광주 통합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(안) 무효확인, 효력정지 가처분

□ 진행상황

- 2010. 2. 1 : 사건접수(원고 → 성남지원)
- 2010. 2. 8 :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법원 심문(성남지원)
 - 행정소송건인데 민사소송으로 접수를 잘못하였으므로, 고등법원(수원지방법원)으로 이첩
- 2010. 4. 8 : 변론 및 심문(1차,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제3행정부)
 - 소송당사자를 시의회(의장)로 할지 성남시(시장)로 할지 특정하여 제출하기 바람(원고측)
- 2010. 5. 20 : 변론 및 심문(2차)
 - 원고가 소송당사자를 특정하지 못해 진행사항 없음
- 2010. 6. 24 : 변론 및 심문(3차)
 - 원고가 소송당사자를 특정하지 못해 진행사항 없음
- 2010. 8. 19 : 변론 및 심문(4차)

□ 향후계획

- 재판 진행상황에 따라 선임변호사와 협조하여 소송수행